

보도 일시	배포시	배포 일시	2022. 7. 19.(화) 증선위 회의 후
담당 부서 <총괄>	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	책임자	단 장 <sup>代</sup> 손영채 (02-2100-2601)
		담당자	사무관 이주현 (02-2100-2518)

##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증선위 의결

### < 주요 내용 >

- 증권선물위원회(위원장 :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)는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인 9개 증권사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에 대해, 위법으로 볼 수 없으며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심의·의결하였습니다('22.7.19일).
- 한국거래소는 시장조성활동 재개 前,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, 시장조성활동의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.

### 1 증권선물위원회 의결내용

- 금융감독원은 작년 9.1일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인 9개 증권사에 대하여,
  -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·취소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준 혐의(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)로 총 48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조치 사전통지를 하였고,
  - 지난 4.27일 증권선물위원회에 본 조치안의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.
- 증선위는 네 차례의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를 포함, 총 여섯 차례의 회의를 통한 심의 결과,
  - 시장조성자의 의무 이행에 수반되는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서는 시세 변동에 대응한 호가의 정정·취소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,

○ 국내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의 호가 정정·취소율<sup>1)</sup> (95.68% ~ 99.55%)이 외국<sup>2)</sup>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.

1) 조치대상자의 혐의 종목 정정·취소 호가수량 / 조치대상자의 혐의 종목 전체 호가수량

2) 뉴욕증권거래소의 경우 2020년 시장 전체 주문(시장조성자 거래 포함)의 日평균 정정·취소율이 약 94.6%(해외 시장조성자의 정정·취소율에 대한 수치는 공식적으로 공개된바 없음)

○ 아울러, 금융당국이 승인한 제도 하에서 시장조성자의 특정 행위유형이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전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.

□ 증선위는 이러한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, 해당 시장조성호가 정정·취소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시장질서 교란행위\*에 해당하지 않으며,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최종 의결하였습니다.

\* 【자본시장법 §178의2② i】 호가를 제출한 후 해당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·취소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

< 주요 경과 >

일 시	내 용
2021. 1.18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금감원의 시장조성계좌 혐의 발견 및 조사 착수</li> <li>⇒ 시장조성자 12개社 중 9개社의 위반혐의 발견</li> </ul>
2021. 9. 1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9개 증권사에 대한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</li> <li>⇒ '21.9.1일 부터 현재까지 주식시장 시장조성활동 중단</li> </ul>
2022. 4.27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금감원 → 증선위 심의·상정 요청</li> </ul>
2022. 5. 2. ~ 6.20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* 심의(총4회)</li> <li>* 불공정거래 조사 및 공시심사 결과 조치안에 대한 증선위 자문기구</li> </ul>
2022. 7.13. ~ 7.19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증권선물위원회 심의·의결</li> </ul>

## 2

## 향후 추진계획

### 가. 시장조성활동 재개 및 제도개선 추진

□ 금융위 소관부서와 한국거래소는 이번 금감원 조사의 취지 및 증선위 심의 내용을 감안하여 시장조성활동이 원만하게 조속히 재개\*될 수 있도록,

\* 재개 절차 : 시장조성자 모집공고 및 선정 → 시장조성종목 배정 → 시장조성자 계약 체결  
→ 시스템 점검 및 시장 안내 → 시장조성업무 시작

○ 제도 운영상의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본 후,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\*을 추진하고,

\* 【예시】 적극적인 시장조성 유인 제공을 위해 시장조성자 성과 평가시 시장조성실적 배점을 대폭 확대(60→90점)하고, 일정기준 미달시 차년도 시장조성자 선정시 배제

○ 시장조성의무의 철저한 준수를 담보하기 위해 시장조성의무 이행점검을 강화\*해 나갈 계획입니다.

\* 【예시】 일별 의무이행(거래시간의 60% 이상 매수·매도 양방향 호가를 제출하여 최대 4~8tick 의무스프레드 유지) 상황 점검을 분기별에서 상시로 변경

### 나. 시장조성자 등에 대한 시장감시 강화

□ 한국거래소(시장감시본부)는 시장조성자의 활동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발생 개연성\*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시장조성호가에 대한 점검주기를 단축하고(반기→분기),

\* 【예시】 시장조성자가 ①매수 또는 매도 일방향에 대량의 호가를 제출하거나, ②매수호가 제출 후 상승된 가격에 보유물량을 매도하고 既제출한 매수호가를 취소하는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, 시세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

○ 알고리즘을 이용한 초단기 매매에 대한 시장감시업무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\*해 나가겠습니다.

\* 【예시】 다수 종목을 대상으로 수분 이내에 시장수급에 집중 관여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거래가 체결되도록 유인하는 불건전매매 행태에 대한 적발 기능 강화

담당 부서 <총괄>	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	책임자	단 장 <sup>代</sup> 손영채 (02-2100-2601)
		담당자	사무관 이주현 (02-2100-2518)
<공동>	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	책임자	과 장 이수영 (02-2100-2650)
		담당자	사무관 장원석 (02-2100-2654)
<공동>	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	책임자	부 장 이재훈 (02-3774-9020)
		담당자	팀 장 안현수 (02-3774-9021)
<공동>	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	책임자	부 장 정규일 (02-3774-8580)
		담당자	팀 장 정창규 (02-3774-859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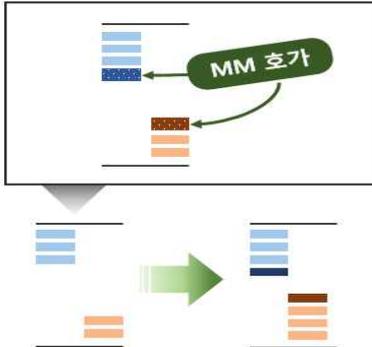


- **(제도 개요)** 시장조성자는 특정종목의 호가 스프레드\*가 일정범위 내로 유지되도록 ①매수·매도 양방향으로 ②일정 금액\*\* 이상의 의무 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상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제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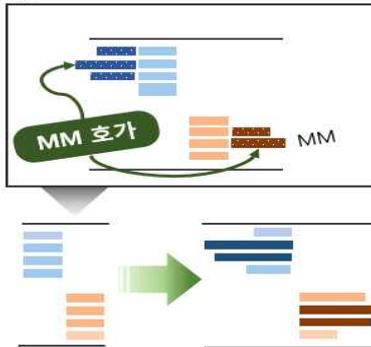
\* 종목별 유동성을 고려하여 최대 4~8tick 의무 부여

\*\* 종목별 유동성을 고려하여 매수·매도 각각 2백만~1천만원 의무 부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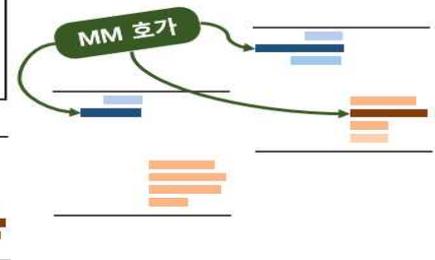
(1) 호가스프레드 축소



(2) 호가심도 향상: 가격안정성 ↑



(3) 장중 항시 호가공급 : 일반투자자 체결가능성 ↑



- **(의무 사항)** 종목별로 일중 거래시간 중 60%\* 이상(일중 의무이행률), 분기 거래일수 중 70%\* 이상(분기 의무이행률) 이행해야 함

\* '19~'21년 시장조성자의 평균 일중 및 분기 의무이행율은 현재 기준을 10~20%p 상회하는 수준으로 이행

- **(제도 효과)** 시장조성자의 충실한 의무이행은 ①거래비용 절감, ②가격 변동성 완화, ③거래 활성화에 기여하며, 이는 양적\*·질적\*\* 지표로 확인 가능

\* 거래량, 거래대금, 회전율 등

\*\* 최우선평가스프레드, 가격연속성, 체결률 등

- ① **(거래비용 절감)** 최우선평가를 포함하여 의무스프레드 내에서 지속적인 양방향 호가 제출 및 유지를 통해 호가 스프레드 축소
- ② **(가격 변동성 완화)** 시장조성호가는 호가심도를 두텁게 하여(가격연속성↑) 일시적인 호가 불균형이 야기할 수 있는 변동성 및 시장충격 완화
- ③ **(거래 활성화)** 지속적인 유동성 공급을 통해 거래 자체를 증가시키는 동시에 투자자의 체결가능성을 높이는 등 거래환경 개선에 기여

※ 호가별 심도가 얇은 저유동종목은 가격연속성이 떨어져 시장충격에 취약하므로 시장조성호가 의존도가 높으며 그 효과도 두드러짐